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의안번호 : 제3298호

나. 제안자 : 최유희 의원(찬성자 20명)

다.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별표 4의 2, 3호는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부여하였으나, 조례 제31조 단서는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규정함
- 별표 4의 해당 규정은 권한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유표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을 자치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안 별표 4의 2, 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1조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²⁾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에서의 이행강제금을 시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27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른 [별표 4]에서 자치구청장이 부과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등 중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은 <u>자치구청장</u> 이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 ----- ----- ----- ----- ----- 시장 -----

1)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 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항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 내용

-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 본문은 법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단서 조항은 자유표시구역 안에서의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권한 위임의 세부적인 사무를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의 광고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두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현행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별표 4]3)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의 광고물등에 대한 이행

3)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7조의2 관련)

2.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 중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3.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 허가·신고를 위반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을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강제금을 자치구청장이 부과토록 하고 있어 같은 조례 내에서 각 조항 간 서로 다른 규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처리 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31조(권한의 위임) 제1항 내용 >

조례 본문 내용	권 한	비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자치구청장	위임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현재 조례 중 자유 표시구역 내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시장으로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의 단서인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조 제2항 단서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중 부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u>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3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단서 삭제)</p>